

2023년 건강일터 조성지원(휴게시설 설치비용) 사업 추가 공고[4차]

신체적 피로,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『'23년 건강일터 조성지원』 사업을 공동휴게시설에 한하여 추가 신청을 받으니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6월 1일

I 사업목적

- 신체적 피로,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으로 작업성질환 예방에 기여

II 사업개요

- 추가 공고대상 : 공동휴게시설

- 신청가능 지역 : 전국 (설치 소재지 기준 관할 공단 일선기관에 신청)
- 공단 일선기관 7개 권역 단위로 잔여 예산 범위 내 운영
(일선기관 및 권역 현황은 별첨 6 참조)

- 추가 공모기간 : '23. 6. 1. (목) 9:00 ~ '23. 6. 16. (금) 18:00

※ V. 세부추진절차 참조

- 지원품목 : 휴게실 및 냉·난방기 등 휴게시설 품목

- 보조지원 대상 휴게실은 투자완료 시 **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(휴게시설 설치·관리기준)**과 **건축법** 등 관련 인허가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

※ 신청 전 지자체에 휴게시설 설치(컨테이너 등)와 관련한 인·허가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

※ 사회적 현안, 산업재해발생 현황, 고용노동부고시·공단 규칙개정 등에 따라 지원설비 및 지원기준 변동 가능

□ 신청대상
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

※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(예: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협의회) 명의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, 산재보험을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함
 - 건물관리업 회사 등 지식산업센터 관리를 위탁·도급·용역받은 (관계)수급인만 산재보험 가입한 경우 비대상
 ※ 산업단지 내 사업주 단체, 산업단지 관리주체가 공동 휴게시설을 신청하는 경우, 『산업 단지 산재예방시설 개선사업』으로 지원

-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* 규모 이하의 기업의 사업주 (다수 사업주가 공동휴게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 한함)

*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을 접속하여 발급 신청 가능한 중소기업 확인서 [소기업, 소기업(소상공인)]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

【상시근로자수 판단】

- ▶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2조제1항제3호)에 따라 “상시근로자수”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: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수로 나눈 수
-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: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

□ 참여제한

-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사업에 선정된 이후라도 지원제외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

【지원제외 대상】

- ①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
- ②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
-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
- ④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미가입 하였거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
- ⑤ 건설업(건설업 본사를 통한 건설현장 지원불가, 단 건설업 본사에 설치하는 경우는 인정)
- ⑥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작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

IV 지원내용

- 공동휴게시설 지원금액 : 최대 1억원(단, 다수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 당 최대 3천만원)
- (지원비율) 공단 판단금액의 70%

신청 주체별 한도액

- ① 지식산업센터 관리하는 자 신청시 : 최대 1억원
- ② 다수 사업주 신청시 : 최대 1억원. 단, 사업주 당 3천만원 초과 불가
(한도 예시 : 2개 사업장이 설치시 6천만원, 3개 사업장 설치시 9천만원, 4개 이상 사업장 신청시 1억원)

□ 지원품목 및 지원기준 : 세부사항 별첨2 참조

○ 휴게시설 :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 전용의 공간

- ① (신규설치) 사업장 건축물 내부에 건축자재로 휴게실 신규 설치(벽체·바닥·천장마감, 조명설치 등 휴게시설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)
- ② (개선) 사업장 건축물 내부의 여유공간을 휴게시설로 개선(벽체·바닥·천장마감, 조명설치 등 휴게시설 인테리어 공사, 기존 휴게실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도 포함)
- ③ (컨테이너하우스·조립식 휴게실) 사업장 건축물 내부에 휴게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없어 부지 내에 휴게실 전용의 컨테이너하우스 또는 조립식 휴게실을 설치

○ 휴게비품·설비 : 휴게실 내부의 휴게환경 조성에 필요한 물품 또는 설비

- ① (냉·난방기) 휴게실 적정온도(18~28°C)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및 제습기능이 있는 설비(이동식 제외)
- ② (쇼파·의자) 근로자 휴게용 쇼파·의자(휴게실 내부에 설치)
- ③ (테이블·탁자) 근로자 휴게용 테이블·탁자(휴게실 내부에 설치)
- ④ (조명시설) 휴게실 내부 조도를 100~200 Lux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명

V 세부 추진절차



① (공모신청)

- (신청기간) '23. 6. 1. (목) 9:00 ~ '23. 6. 16. (금) 18:00
 - (신청방법) 사업장 소재 공단 일선기관에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제출
(우편발송 또는 일선기관 방문)(사업주)
※ 우편의 경우 신청기한 내 소인일(우편 접수일자) 인정
 - (문의) 1644-8845 (가까운 일선기관으로 연결)
 - (제출서류) ※ 공단 누리집(kosha.or.kr) 게시(사업소개→재정지원→건강일터 조성지원→공지사항)
 - (일선기관 현황) 별첨 6 참조

제출 서류

- ①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 신청서(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서 포함)
- ② 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-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
- ④ 청렴의무 이행서약서(공단↔사업주)
- ⑤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(반드시 사업주의 자필 서명 후 제출)
- ⑥ 사업자 등록증
- ⑦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
- ⑧ 상품설명서(카달로그 등) 또는 외관도면 등[설치항목, 사양서 및 도면(가격근거서류 포함)]
- ⑨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
- ⑩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
- ⑪ 지원품목 설치대상 장소에 대한 사진 증빙서류(현장 사진 등)
- ⑫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점수부여 증빙서류(해당할 경우만 제출)
 - (고열작업)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사본
 - (한랭.다습작업) 해당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사진, 공정설명서 등)
 - (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) 야간특수검진 결과 사본
 - ①노사문화우수기업 ②강소기업 ③일학습병행제 인정 사업장
④NCS 컨설팅 우수사례 선정기업 ⑤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 기업 ⑥일자리 으뜸기업
⑦일터혁신 우수기업(인증) ⑧기업채용지원패키지 참여사업장 ⑨산학협력 우수기업
⑩여름휴가분산 우수기업
 - KOSHA-MS 인증서, 위험성평가 인정서
- * 신청일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해 점수가 부여됨

(주) 사업주가 원활 경우 공사원가계산서(제작원가계산서)를 자금지원 신청 시 제출 가능

- ② (선정) 공모기간 종료 후 7개 권역별로 통합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사업장 선정

 - ‘지식산업센터 관리하는 자’를 최우선으로 선정하고, 그 외 신청사업장은 별첨 3의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 지원대상 선정
 - 공단 7개 권역(광역본부, 경기지역본부)별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지원대상 선정
 - 투자계획 확인 등을 통하여 제출서류(증빙자료)가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신청 및 자금결정 취소

③ (투자계획 확인) 선정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또는 서면확인 등을 통해 투자 계획 확인(공단)

- 설치 예정장소, 설치 가능여부 등 현장확인을 통하여 투자계획의 적정성 검토
- 보조지원신청 대상 휴게실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(휴게시설 설치·관리기준)(별첨1)를 충족할 수 있는 투자계획 제출

④ (보조금 결정) 보조금 결정대상자 및 보조금액 결정(공단)

○ 보조금 결정

- 사업장별 신청서류 및 현장확인 결과를 검토하여 보조금 대상자와 보조 지원비율에 따른 보조지원 가능 금액을 일선기관별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결정
- 공사(제작)품의 경우 견적서(상세내역서 포함)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결정하나 사업장에서는 보조금 지급(투자완료) 요청 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공사(제작) 원가(검토)보고서를 반드시 제출[공사(제작)품 보조지금 산정기준(별첨4) 참조]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보조금 결정 및 지급이 취소될 수 있음

※ 사업장에서 원활 경우 보조금 신청 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'공사(제작)원가 계산서' 제출 가능하며 별첨4에 따라 보조금 지원가능금액 결정

- 보조금 결정 전 계약 또는 설비투자 불가함(해당 사실 확인 시 신청서 반려 또는 결정 취소)

○ 보조금 선지급(필요 시)

- 투자금액 마련이 어려운 열악한 사업장을 돋기 위해 지원결정 사업장의 사업주가 요청 시 보조금 일부(지원결정금액의 70% 이내) 선지급
- 제출서류

①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선금급 신청서(첨부 서식모음 참조)

② 설비 구매·설치 계약서 사본 1부

③ 입금 신청통장 사본(사업주) 1부

④ 지급보증보험 증권 1부

- 보험기간: 약정일(선지급 요청일 이전날짜. 단,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) ~ 4년(사후관리기간(3년)+환수조치 필요기간(1년))"으로 적용

- 가입금액: 결정된 보조금액 전체

⑤ (시설개선) 제출한 투자계획에 따라 공사(제작) 또는 물품 구매(사업주)

-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* 시설개선 후 투자완료확인 요청

* 단, 휴게시설의 경우 7월 이후 결정된 사업장은 금년 내 시설개선 완료하고, 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함

- 시설 설치장소, 공급업체, 모델, 수량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공단 승인을 받아야 함

⑥ (투자완료 확인)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(사업주)

구 분

❶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

❷ 입금 신청통장 사본 각 1부

❸ 세금계산서(청구용) 사본

❹ 구매·설치 계약서 사본

❺ 공사(제작)원가(검토)보고서

❻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

❼ 지급보증보험 증권

❽ 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

❾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

❿ 휴게시설 투자완료 점검 확인서

주) 1. 다수 사업장이 공동휴게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각각 나누어 신청한 경우 ❾ 구매·설치 계약서에 모든 사업주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함

2. 자급신청 시 공사(제작)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결정받은 경우 ❻ 생략

※ 제출서류 중 원가검토 보고서,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

<지급보증보험 증권>

- ▶ 보험 계약기간은 "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(단,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)~ 4년(사후관리기간3년)+환수조치 필요기간1년으로 적용
(예시) 투자완료확인 요청일: '23.10.13.(지급보증기간: 4년)
보험기간: '23.9.30. ~ '27.9.29.
- ▶ 피보험자는 안전보건공단(사업자등록번호 122-82-04898)로 함
- ▶ 지급보증보험 가입 문의처: 관할 지역 SGI서울보증보험

- 공단은 사업계획과 개선사항의 일치여부 및 적정여부 확인
- 공사(제작)품의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공사(제작)원가(검토) 보고서를 검토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[공사(제작)품 보조지금 산정기준(별첨4) 참조]
- 설비 설치 장소, 설비 모델·수량 등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공단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, 보완 또는 부적정으로 처리될 수 있음
- 보조지원 대상 휴게실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(휴게시설 설

치·관리기준)과 건축법 등 관련 인허가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[휴게시설 투자 완료 점검 확인서(별첨5) 제출]

- 제출한 서류(세금계산서 등)를 사후에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, 사후 기술지도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, 사업취소가 될 수 있음

⑦ (보조금 지급) 투자완료확인 이후 1~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(공단)

⑧ (사후관리)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을 위하여 투자 완료 다음연도부터 사후관리 실시(3년)

VI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안내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된 **서류를 허위로 제출**하거나 그 밖의 **부정한 사항(자부담비용 대납 등)**이 발견될 경우, 신청사업장의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,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(최대 5배)이 발생할 수 있음

【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 보조지원 부정수급 금지】

- ▶ 건강일터조성지원 보조지원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물품 판매 또는 공급업체(공사업체)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세 일부(또는 전부)를 현금 또는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부정수급 행위는 금지됩니다.
- ▶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보조·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과 추가적인 금액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.
 - 부정수급의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
 - 보조지원 결정 취소 시 최대 5년간 참여 제한 조치 적용

【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른 보조지원 취소 사유】
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·지원을 받은 경우
- 보조·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
- 보조·지원 대상을 임의매각·훼손·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·관리·사용하지 아니한 경우
-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
- 보조·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
- 보조·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
- 건강일터 조성지원 재정지원사업은 공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처리
- 당해연도 공단 보조사업(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, 안전투자혁신 사업,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,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사업 등) 결정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결정 대상에서 제외
※ 단, 타사업 결정이 취소된 경우 신청 가능

- 별첨 1. 휴게시설 설치·관리 기준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)
2. 건강일터 조성지원(휴게시설 설치비용) 보조 지원품목 및 지원기준
 3.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
 4. 공사(제작)품 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
 5. 휴게시설 투자완료 점검 확인서
 6. 문의 및 접수처

별첨1 휴게시설 설치·관리 기준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)

1. 크기

- 가.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. 다만,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(이하 이 표에서 “공동휴게시설”이라 한다)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.
- 나.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.1미터 이상으로 한다.
- 다.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, 이용자 성별,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 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.
- 라.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, 이용자 성별,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.

2. 위치: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.

- 가.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.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.
- 나.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.
 - 1) 화재 ·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
 - 2)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
 - 3)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

3. 온도

적정한 온도(18°C ~ 28°C)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.

4. 습도

적정한 습도(50% ~ 55%. 다만,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.

5. 조명

적정한 밝기(100勒스 ~ 200勒스)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.

6.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.

7.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.

8.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.

9.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.

10. 휴게시설의 청소 · 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.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.

11.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.

※ 비고

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· 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.

가.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: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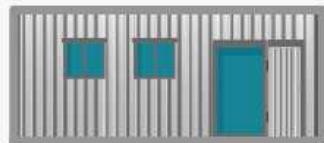
나.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: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

다.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: 제4호의 기준

별첨2 건강일터 조성지원(휴게시설 설치비용) 보조 지원품목 및 지원기준

① 휴게시설

① 신규 설치



[예시]

- (최대지원한도) : 보조금 지원 한도 내
- (수량) 제한없음(단, 부지 및 이동거리를 고려한 적정 수량)
- (지원조건) 사업장 건축물 내부공간 내 적정면적으로 **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(휴게시설 설치.관리기준)** 충족
※ 보조금 지급 요청(투자완료)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「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」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

□ 보조지원 기준

- 견적서(상세내역포함)를 검토하여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 후, 투자완료 시 제출한 공사원가(검토)보고서와 비교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

※ 사업장에서 보조금 신청 시 공사(제작)원가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자료를 검토하여 최대 지원 가능 금액 결정

- 공사종류.금액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있는 업체만 시공 가능(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)
- 화장실, 샤워실, 수도공사는 포함되지 않음
- 건축법, 소방법,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적사항(인허가 등)은 신청 사업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며, 위법사항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 있음

※ 관련법령 위반으로 지급설비가 설치완료 후 철거 등 이루어질 경우 지급금액 환수

□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관련 서류

- ①견적서(상세내역서 포함), ②도면, ③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(또는 배치도), ④시공관련 면허 사본(공사금 액에 따라 해당 시)

② 개선(리모델링)



[예시 사진]

- (최대지원한도) : 보조금 지원 한도 내
- (수량) 제한없음(단, 부지 및 이동거리를 고려한 적정 수량)
- (지원조건) 사업장 건축물 내부공간 내 적정면적으로 **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(휴게시설 설치.관리기준)** 충족
※ 보조금 지급 요청(투자완료)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「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」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

□ 보조지원 기준

- 견적서(상세내역포함)를 검토하여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한 후, 투자완료 시 제출한 공사원가(검토)보고서와 비교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
※ 사업장에서 보조금 신청 시 공사(제작)원가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자료를 검토하여 최대 지원 가능 금액 결정
- 공사종류.금액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있는 업체만 시공 가능(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)
- 화장실, 샤워실, 수도공사는 포함되지 않음
- 건축법, 소방법,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적사항(인허가 등)은 신청 사업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며, 위법사항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 있음
※ 관련법령 위반으로 지급설비가 설치완료 후 철거 등 이루어질 경우 지급금액 환수

□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관련 서류

- ①견적서(상세내역서 포함), ②도면, ③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(또는 배치도), ④시공관련 면허 사본(공사금 액에 따라 해당 시)

③ 컨테이너하우스 또는 조립식



[예시]

- (최대지원한도) : 100만원/ 1m^2 (바닥면적 기준)
- (수량) 제한없음(단, 부지 및 이동거리를 고려한 적정 수량)
- (지원조건) 사업장 공간 내 적정면적으로 **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21의2(휴게시설 설치.관리기준) 총족**

※ 보조금 지급 요청(투자완료) 시 지원조건의 총족여부 확인한 후 「**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**」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

□ 보조지원 기준

-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"나라장터 종합쇼핑몰(<https://www.g2b.go.kr>)" 등록물품에 한해 지원하며, 물품(모델)별 나라장터 판매금액을 최대 지원 가능가격(가격결정 근거자료)로 함
 -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이 없을 경우 견적서(상세내역포함)를 검토하여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한 후, 투자완료 시 제출한 공사(제작)원가(검토)보고서와 비교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
- ※ 사업장에서 보조금 신청 시 공사(제작)원가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자료를 검토하여 최대 지원 가능 금액 결정
- 별도의 배송.설치비가 소요되는 경우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에 명기된 금액을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가능(보조금 결정 시 반영 후 완료 시 확인)
 - 화장실, 샤워실, 수도공사는 포함되지 않음
 - 건축법, 소방법,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적사항(인허가 등)은 신청 사업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며, 위법사항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 있음
- ※ 관련법령 위반으로 지급설비가 설치완료 후 철거 등 이루어질 경우 지급금액 환수

□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관련 서류

- ①견적서, ②상품상세정보(카탈로그, 제품상세설명서 등), ③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(또는 배치도)

② 휴게시설 비품 · 설비

①-1 냉.난방기(벽걸이 및 스탠드형)



[예시]

- (최대지원한도) : 200만원/1EA
- (수량) 휴게실 당 1대로 제한
- (지원조건) 적정온도(18~28°C)를 유지할 수 있는 냉.난방 및 제습기능이 있는 설비에 한하여 지원(이동식 제외)
※ 온·습도 확인이 불가한 제품일 경우 온·습도계 개별 설치
※ 보조금 지급 요청(투자완료)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「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」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

□ 보조지원 기준

-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“나라장터 종합쇼핑몰(<https://www.g2b.go.kr>)” 등록물품에 한해 지원하며, 물품(모델)별 나라장터 판매금액을 최대 지원 가능가격*(가격결정 근거자료)로 함
* 실내기, 실외기 및 배송·설치비용 포함 가격(기본시공 외 추가시공 비용은 제외)

□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관련 서류

- ①견적서, ②상품상세정보(카탈로그, 제품상세설명서 등), ③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(또는 배치도), 등 제출

①-2 냉.난방기(천장형)



[예시 사진]

- (최대지원한도) : 보조금 지원 한도 내
- (수량) 휴게실 당 1식*으로 제한
* 실내기는 휴게실 크기에 따른 적정수량, 실외기는 1대로 제한
- (지원조건) 적정온도(18~28°C)를 유지할 수 있는 냉.난방 및 제습기능이 있는 설비에 한하여 지원(이동식 제외)
※ 온·습도 확인이 불가한 제품일 경우 온·습도계 개별 설치
※ 보조금 지급 요청(투자완료)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「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」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

□ 보조지원 기준

- 천장형에어컨의 경우 콘트롤러 설치, 공조공사 등 현장 조건에 따른 설치조건이 달라 표준화된 가격산정이 어려우므로, 견적서(상세내역포함)를 검토하여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 후, 투자완료 시 제출한 공사원가(검토)보고서와 비교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
※ 사업장에서 보조금 신청 시 공사(제작)원가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자료를 검토하여 최대 지원 가능 금액 결정

□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관련 서류

- ①견적서(상세내역서 포함), ②도면, ③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(또는 배치도) 등 제출

② 쇼파(의자) [근로자 휴게용]



[예시]

- (최대지원한도) : 50만원/1인용
- (수량) 휴게실 면적과 동시 사용인원*을 고려하여 적정 수량 (배치도 확인)

*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수 포함한 동시 사용인원

※ 보조금 지급 요청(투자완료)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「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」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

□ 보조지원 기준

-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"나라장터 종합쇼핑몰(<https://www.g2b.go.kr>)" 등록물품에 한해 지원하며, 물품(모델)별 나라장터 판매금액을 최대 지원 가능가격(가격결정 근거자료)로 함
-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수를 포함하여 지원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휴게실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여야 함

□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관련 서류

- ①견적서, ②상품상세정보(카탈로그, 제품상세설명서 등), ③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(또는 배치도), ④도급관계 증빙서류(해당할 경우) 등 제출

③ 테이블 [근로자 휴게용]



[예시]

- (최대지원한도) : 100만원/1EA
- (수량) 휴게실 면적을 고려하여 적정 수량(배치도 확인)

※ 보조금 지급 요청(투자완료)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「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」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

□ 보조지원 기준

-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"나라장터 종합쇼핑몰(<https://www.g2b.go.kr>)" 등록물품에 한해 지원하며, 물품(모델)별 나라장터 판매금액을 최대 지원 가능가격(가격결정 근거자료)로 함

□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관련 서류

- ①견적서, ②상품상세정보(카탈로그, 제품상세설명서 등), ③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(또는 배치도), 등 제출

④ 조명시설



[예시]

- **(최대지원한도)** : 보조금 지원 한도 내
- **(수량)** 제한없음(단, 부지 및 이동거리를 고려한 적정 수량)
- **(지원조건)** 휴게실 내 적정 조도(100~200lux)를 충족하는 조명
※ 보조금 지급 요청(투자완료)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
「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」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

□ 보조지원 기준

- 견적서(상세내역포함)를 검토하여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 후, 투자완료 시 제출한 공사원가(검토)보고서와 비교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
※ 사업장에서 보조금 신청 시 공사(제작)원가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자료를 검토하여 최대 지원 가능 금액 결정

□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관련 서류

- **①견적서**(상세내역서 포함), **②도면**, **③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**(또는 배치도), **④공사원가계산서** 등 제출
※ **④공사원가계산서**는 투자완료 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작성한 ‘원가계산(검토)보고서’를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생략 가능(별첨1 「공사(제작)품의 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」 참조)

별첨3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

※ 다음 표의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되, 우선 선정기준에 관계없이 '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'를 최우선으로 선정함

선정 항목	항목별 가중치	비고
■ 일반 항목	90점	
① 휴게 취약직종 근로자 종사 사업장 - 전화상담원(39912), 톨봄서비스 종사원(4211), 텔레마케터(5313), 배달원(922),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(941), 아파트 경비원(94211) 및 건물경비원(94212)	20점	사업장 정보조회(공단 ERP)와 신청서류(사업자등록증 등)를 통해 확인 <산재업종> (90101)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, (90104)기타의사업-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(종업종), (90102)위생 및 유사서비스업, (50105~50111)화물운수업, 택배업, 퀵서비스업, (90714)기타의사업-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<고용업종> (75991)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
② 고열·한랭·다습작업장 * 해당 시 증빙자료 제출	20점	안전보건규칙 제559조의 고열작업 한랭작업 다습작업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인정 ※ 고열작업의 경우 작업환경측정고열 실시 여부로 확인 ※ 한랭다습작업의 경우 현장사진 공정설명서 등으로 판단하며 투자계획서 사실여부 확인
③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을 하는 사업장 * 해당 시 증빙자료 제출	15점	(야간작업) 산인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4호에 해당하는 작업야간특검 실시여부로 확인
④ 사업장의 영세성	10점	10인미만 10점, 10~20인미만 5점
⑤ 근골격계 뇌심혈관계 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병이 발생하였던 사업장	10점	최근 3년간('20~신청일) 산재승인된 사례에 한함
⑥ 고령근로자 수 - 만 55세 이상 근로자 수	최대 5점	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통해 확인 고령근로자* 1명당 1점 부여
⑦ 신규 설치 대상 사업장	5점	별첨2 보조지원품목 중 휴게실 신규설치(사업장 건축물 내부공간 내 적정면적에 휴게실 신규설치)
⑧ 공단 보조사업 최초 지원 사업장	5점	
■ 자율활동 우수항목	10점	
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*	최대 5점	각 1점씩 * 사업장에서 인정(포상) 등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
* ①노사문화우수기업 ②강소기업 ③일학습병행제 인정 사업장 ④NCS 컨설팅 우수사례 선정기업 ⑤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기업 ⑥일자리 으뜸기업 ⑦일터혁신 우수기업(인증) ⑧기업채용지원패키지 참여사업장 ⑨산학협력 우수기업 ⑩여름휴가분산 우수기업		
⑩ 공생협력 참여한 협력업체, KOSHA-MS 인증,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기업	5점	(공생협력) '22~'23년 참여업체에 한함 (위험성평가인정) 공단에서 인정한 것으로 인정기한 내일 경우에 적용
계		
※ 선정기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공통적용 항목 순번(①→②→③→④→⑤→⑥→⑦→⑧) 으로 우선순위 적용 → 자율활동 우수항목(⑩→⑨) 항목별 우선순위 적용하고, 이후에도 동점일 경우에는 근로자수 적은 순으로 선정		
※ 공동휴게시설을 함께 신청한 각 회사 평가점수 합산 후 평균 점수 산출		
※ 증빙자료 미제출 시 미적용		
※ 투자계획 확인 등을 통하여 증빙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신청 및 자금결정 취소		

별첨4

공사(제작)품 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

1. 공사(제작) 원가(검토)보고서를 제출한 경우(보조금 지급요청 시)

- 보조금 신청 시 견적서(도면, 세부내역서 포함)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결정받고, 보조금 지급(투자완료확인)요청 시 원가계산용역기관^{*}에서 작성한 공사(제작)원가(검토)보고서를 제출하여 최종 보조금^{**} 확정

* 원가계산용역기관[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(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)를 충족 하는 업체: 등록증 또는 인증서 등으로 확인]

** 견적서, 원가계산(검토)보고서 중 최저금액과 원가(검토)보고서 작성비용의 합을 보조지급 기준 가격(공단 판단금액)으로 산정(단, 최초 보조금 결정금액 초과 불가)

- 원가계산전문기관을 통한 원가(검토)보고서 작성비용(부가세 제외) 중 일부를 소요 금액으로 인정[단 소요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(증빙자료)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]

※ 세금계산서(증빙자료) 등의 실 소요금액이 인정금액보다 적을 경우 해당금액 인정

■ 공사(제작) 소요금액별 원가(검토)보고서 작성비용 인정금액

공사금액 (소요금액)	4천만원 미만	4천~5천만원 미만	5천만원 이상
원가(검토)보고서 작성비용 인정금액(공단)	40만원	50만원	60만원

※ 예시) 근로자수 10인 사업장의 휴게실 공사금액 3,000만원인 경우

(총 소요금액) 3,000만원(공사금액) + 40만원(보고서 작성비용 최대 인정금액) = 3,040만원

(보조확정금액) 3,040만원(공단판단금액)×70%(보조비율) = 2,128만원

2. 공사(제작) 원가계산서를 제출한 경우(보조금 신청 시)

-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예정가격 작성기준(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, 2021.12.1.)에 따라 작성한 공사(제작)원가계산서 적용

- 제출한 공사(제작)원가 계산서 금액의 80%^{*}를 보조지급 기준가격(공단 판단금액)으로 산정

* 공단 연구용역 및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하여 산정한 공단 보조금 지급가격 산정기준

- 원가계산서 작성 비용 일부(부가세 제외)을 소요금액으로 인정[단 소요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(증빙자료)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]

※ 세금계산서(증빙자료) 등의 실 소요금액이 인정금액보다 적을 경우 해당금액 인정

■ 공사(제작) 소요금액별 원가계산서 작성비용 인정금액

공사금액 (소요금액)	3천만원 미만	3천~5천만원 미만	5천만원 이상
원가계산 작성비용 인정금액(공단)	50만원	70만원	100만원

※ 예시) 근로자수 10인 사업장의 휴게실 공사금액 2,000만원인 경우

(총 소요금액) 2,000만원(공사금액) + 50만원(원가계산 비용 최대 인정금액) = 2,050만원

(공단 판단금액) 2,050만원×80%(가격산정기준) = 1,640만원

(보조확정금액) 1,640만원(공단판단금액)×70%(보조비율) = 1,148만원

별첨5 휴게시설 투자완료 점검 확인서

휴게시설 투자완료 점검 확인서

□ 휴게실 설치·관리기준 준수 여부

연번	항목	문항	적합여부	
1	크기 적정성	· 최소면적 6m ² 이상, 천장고 2.1m 이상 인가? *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m ²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	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
		·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바닥면적 '6m ² x공동 사업장수' 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면적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	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
		· 공단에 제출한 투자계획서와 일치하는가?(보조금 신청시 작성)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	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
2	설치위치 적정성	·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였는가? *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m ²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	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
		· 화재폭발위험장소/유해물질 취급장소/소음/분진을 저장·취급하는 장소로부터 떨어진 곳에 설치하였는가? *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m ²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	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
		·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위치하는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	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
3	안내표지 부착	· 휴게실 입구 또는 보기쉬운 장소에 근로자 휴게시설임을 인지할 수 있는 안내표지가 부착되어 있는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	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
4	냉난방 시설	· 냉·난방 및 습도조절 기능을 갖추고 있는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	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
		· 신청서 상의 모델과 동일한가?(보조금 신청시 작성)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	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
		· 온습도 확인가능한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	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
5	조명시설	· 공단에 제출한 투자계획서와 일치하는가?(보조금 신청시 작성)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	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
		· 조도를 100~200lux 수준으로 조절이 가능한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	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
6	휴게비품·설비	· 신청서 상의 제품(쇼파, 의자, 테이블)과 동일한가?(보조금 신청시 작성)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	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
7	담당자 지정	· 휴게시설의 청소·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	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

□ 건축법 등 관련법령 준수(휴게실 설치 시 작성)

연번	항목	문항	적합여부	
1	건축법 등 준수	· 건축법, 소방법,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적사항(인허가 등)을 준수 하였는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	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

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통하여 개선한 휴게시설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·관리기준을 충족 등 위의 사실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2023년 월 일

사업주

(서명)

별첨6 문의 및 접수처

□ 건강일터 조성사업 대표번호 1644-8845 또는 아래 공단 일선기관으로 문의

권역	연번	일선기관명	연락처	주소	관할지역
서 울	1	서울광역본부	02-6711-2826	(04512)서울특별시 중구 칠판로 42, 7층	서울특별시(중구, 종로구, 동대문구, 서초구, 강남구, 용산구, 마포구, 서대문구, 은평구)
	2	서울동부지사	02-2086-8024	(05836)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35, 4층	서울특별시(성동구, 광진구, 송파구, 강동구, 중랑구, 노원구, 강북구, 도봉구, 성북구)
	3	서울남부지사	02-6924-8734	(07254)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베드나루로2길 8, 8층	서울특별시(영등포구, 양천구, 강서구, 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, 동작구)
	4	강원지역본부	033-815-1057	(24436)강원도 춘천시 경춘로237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	강원도(춘천시, 원주시, 흥천군, 인제군, 화천군, 양구군, 횡성군), 경기도(가평군)
	5	강원동부지사	033-820-2571	(25512)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182(교동) 정관빌딩 3층	강원도(강릉시, 속초시, 동해시, 태백시, 삼척시, 양양군, 고성군, 영월군, 정선군, 평창군)
부 산	6	부산광역본부	051-520-0614	(46274)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(부곡동) 4~7층	부산광역시
	7	울산지역본부	052-226-0546	(44713)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83 (2층, 4층)	울산광역시
	8	경남지역본부	055-269-0524	(51430)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9(용호동)	경상남도(창원시, 함안군, 의령군, 창녕군, 진주시, 사천시, 산청군, 거창군, 함양군, 합천군, 하동군, 남해군, 통영시, 고성군, 거제시)
	9	경남동부지사	055-371-7563	(50635)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4층	경상남도(김해시, 밀양시, 양산시)
광 주	10	광주광역본부	062-949-8753	(62364)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(우산동, 광주무역회관빌딩) 8,9,11층	광주광역시, 전라남도(나주시, 화순군, 담양군, 곡성군, 구례군, 장성군, 영광군, 함평군)
	11	전북지역본부	063-240-8532	(55014)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	전라북도(전주시, 정읍시, 남원시, 완주군, 임실군, 순창군, 무주군, 진안군, 장수군)
	12	전북서부지사	063-460-3643	(54001)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로 482	전라북도(익산시, 김제시, 군산시, 부안군, 고창군)
	13	전남지역본부	061-288-8738	(58566)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빌딩 7층	전라남도(목포시, 신안군, 영암군, 무안군, 강진군, 완도군, 해남군, 진도군, 장흥군)
	14	전남동부지사	061-689-4933	(59640)전라남도 여수시 무선중앙로 35	전라남도(여수시, 순천시, 광양시, 고흥군, 보성군)
	15	제주지역본부	064-797-7524	(63217)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(경제통상진흥원 4층)	제주특별자치도

권역	연번	일선기관명	연락처	주소	관할지역
인천	16	인천광역본부	032-510-0564	(21417)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-1	인천광역시
	17	경기중부지사	032-680-6582	(14542)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9 대신프라자 3층	경기도(부천시, 김포시)
	18	경기북부지사	031-828-1963	(11780)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(의정부시 신곡동 801-1),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	경기도(의정부시, 동두천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양주시, 포천시, 연천군), 강원도(철원군)
	19	고양파주지사	031-540-3822	(10390)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-59 제2전시장 오피스동 805호	경기도(고양시, 파주시)
경기	20	경기지역본부	031-259-7160	(16229)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, 10층, 13층(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)	경기도(수원시, 화성시, 용인시, 평택시, 오산시, 안성시)
	21	경기서부지사	031-481-7519	(15464)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(고잔동) 2층	경기도(광명시, 안양시, 과천시, 의왕시, 군포시, 안산시, 시흥시)
	22	경기동부지사	031-785-3328	(13551)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쇏골로 17번길 3	경기도(성남시, 하남시, 이천시, 광주시, 여주시, 양평군)
대구	23	대구광역본부	053-609-0544	(41936)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20, 21층	대구광역시(북구, 중구, 동구, 수성구) 경상북도(영천시, 경산시, 청도군, 군위군)
	24	대구서부지사	053-650-6856	(42661)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(두류동) 5층	대구광역시(남구, 달서구, 서구, 달성군, 성주군, 칠곡군, 고령군)
	25	경북지역본부	054-478-8034	(39390)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 1로 312-23(임수동)	경상북도(구미시, 김천시, 칠곡군, 구미국가산업단지, 영주시, 봉화군, 상주시, 문경시, 안동시, 의성군, 예천군, 영양군, 청송군)
	26	경북동부지사	054-271-2022	(37822)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	경상북도(포항시, 경주시, 영덕군, 울릉군, 울진군)
대전세종	27	대전세종광역본부	042-620-5634	(34122)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339번길 60	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(공주시, 논산시, 계룡시, 금산군, 흥성군, 서천군, 부여군, 청양군)
	28	충북지역본부	043-230-7142	(28393)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161번길 20 (가경동) KT 3층	충청북도(청주시, 진천군, 괴산군, 보은군, 증평군, 옥천군, 영동군)
	29	충북북부지사	043-849-1033	(27478)충청북도 충주시 충원대로 268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해오름학사 1층	충청북도(충주시, 제천시, 단양군, 음성군)
	30	충남지역본부	041-570-3425	(31169)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, 3층	충청남도(천안시, 아산시, 당진시, 서산시, 예산군, 태안군)